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검사 미개시·중단 사유 상향 규정〉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9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행위 등의 조사·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u> 1. <u>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 2. <u>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u>

⑤・⑥ (생략)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u>제7조제5항</u>을 준용한다. ⑤ (생략)	<u>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u> 3. <u>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u>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7조제6항</u>을-----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7조¹⁾에서는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을 통해 관계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항).

또한 동 조에서는 중복조사 제한(제2항),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의 중지(제3항),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조사 종결(제4항), 증표제시 의무(제5항) 등의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6항).

[표 2] 현행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규정 사항

구 분	규 정 사 항
제1항	· 주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목적: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위반 행위 확인 · 요건: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방법: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제2항	· 제한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중복조사 제한
제3항	· 중지: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양 당사자 의사를 고려 조사 중지 가능
제4항	· 종결: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 종결 가능
제5항	· 증표제시: 조사·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
제6항	· 시행령위임: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한편, 현행법 시행령 제1조의4²⁾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검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검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미개시·중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를 미개시·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조사 미개시·중단·중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국세기본법」³⁾ 등 일부 개별법 또는 시행령 등⁴⁾에서 조사의 중지·종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조사는 수범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행정조사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사의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의 방법 등)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8조(조사종결)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신고인의 행위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3. 당해 사건에 대해 제24조에 따라 권고하여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사중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조사를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개시·중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입법례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에서 직접 나열하는 사유 외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개정안에 명시된 3가지 사유 외에도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58